

태국과 말레이시아의 제조물책임법제 연구

최지연



법제교류 연구 13-21-⑦

태국과 말레이시아의 제조물책임법제 연구

최 지 연

태국과 말레이시아의 제조물책임법제 연구

Product Liability Law in Thailand and Malaysia

연구자 : 최지연(부연구위원)
Choi, Jiyeon

2013. 10. 31.

요약문

I. 배경 및 목적

- 세계화의 동향 속에 미국, 중국, 일본 등 전통적인 교역 상대국 뿐 아니라 유럽이나 동남아로 한국 기업의 진출이 늘고 있음
- 동남아시아 주요 수출 대상국 중에서도 태국과 말레이시아는 현지 노동력을 이용 현지 공장을 설립하는 형식과 한국의 생산품을 현지에서 판매하는 형식 등 다양한 형태로 교역양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 다양한 채널로 확대된 국제교역은 상품의 제조와 판매가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하고,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을 의미함.
- 태국은 「제조물책임법」이 독립법으로 제정되어 있고 말레이시아는 「소비자보호법」 내에 독립장으로 구분되어 있음
- 법제교류사업의 일환으로 두 국가의 관련 법제와 배경, 현황을 살펴봄은 한국 기업 진출에 있어 필요함

II. 주요 내용

- 태국의 제조물책임법제

- 「민상법」, 「소비자보호법」, 「식품법」, 「의료기법」, 「산업기준법」 등에서 각각 제조물책임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이 있으나 각 법의 특징상 전반적으로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기 힘들
- 2008년 「제조물책임법」이 제정됨
- 농산품과 전기를 포함 제조되거나 수입된 모든 제품으로 제조물을 정의하여 매우 범위를 넓게 두고, 무과실책임의 원칙을 적용하여 소비자 권리의 보호를 강화함
- 제조물책임사건에 징벌적손해배상이 가능한 것이 특이점
- 말레이시아의 제조물책임법제
 - 「제품판매법」, 「거래기술법」, 「말레이시아 기준법」, 「식품법」, 「증거법」, 「계약법」, 「민법」 등에서 각각 제조물책임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을 둠
 - 제조물책임법이 독립장으로 「소비자보호법」 내 규정되어 있음.
 - 제품에 대한 경제적 배상을 제외한 신체적·정신적 상해 배상, 가족에 대한 정신적 상해 배상까지 가능

Ⅲ. 기대 효과

- 아시아의 법제 정보의 수집, 제공과 교류, 나아가 도남아 시장으로 교역을 확대하는 우리 산업에 시사점 도출
- 법제교류 및 법제도 정비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주제어 : 태국, 말레이시아, 제조물책임법, 소비자보호법

Abstract

I . Background and Objectives

- The pool of Korea's trade partners is changing its components from countries consists of the US, China, and Japan to European and South- East Asian Countries.
- Among those emerging trade partners in the South-East Asian region, Thailand and Malaysia stand out with its continuously increasing trade quantities.
- It is obvious that understanding the product liability and the consumer protection law is essential in conducting business with those foreign countries.

II . Main Contents

- Product Liability Law in Thailand
 - Civil and Commercial Code, Consumer Protection Act, Food Act, Medical Device Act, and Industrial Standard Act are applicable to product liability cases; however, overall, provisions in those laws are not helpful for consumers to pursue and protect their rights.

- Product Liability Act was enacted in 2008, and it provides broad definition of product covering almost all produced, manufactured, or imported goods, including agricultural products and electricity.
 - Product Liability Act introduced the concept of strict liability
 - Punitive damage is allowed, although not very popularly pursued in reality.
- Product Liability Law in Malaysia
- Sales of Goods Act, Trade Description Act, Malaysia Standards Act, Food Act, Evidence, Contract, and Civil Law are applicable to product liability cases; however, overall, provisions in those laws are not very helpful for consumers to pursue and protect their rights.
 - Product Liability makes a separate Chapter in the Consumer Protection Act
 - Physical and mental damage for the claimant, as well as emotional damage for family members, excluding any financial damage for the defective product itself, is allowed under the Product Liability Law.

III. Expected effects

- This study collects legal information throughout Asian countries both for constructing a platform for various states to share information and knowledge and also for providing useful tips for Korean businesses in their expansion to those markets.

This study will be useful as basic information for International legal collaboration and support

➤ Key Words : Thailand, Malaysia, Product Liability Law, Consumer Protection Law

목 차

요 약 문	3
Abstract	5
제 1 장 서 론	13
제 1 절 연구의 목적	13
제 2 절 연구의 범위	15
제 2 장 태국의 제조물책임법제	17
제 1 절 개 관	17
1. 소비자보호법	17
2. 식품법·약품법	18
3. 의료기법	19
4. 산업기준법	19
5. 제조물책임법의 제정	20
제 2 절 민상법의 제조물책임 관련규정	21
1. 계약 관계	21
2. 불법행위	23
제 3 절 제조물책임법의 주요내용	25
1. 적용범위	25
2. 입증책임	27
3. 책임주체	28

4. 배상범위	30
5. 면책사유	31
6. 집 행	32
제 4 절 소 결	33
제 3 장 말레이시아의 제조물책임법제	35
제 1 절 개 관	35
1. 제품판매법	35
2. 거래기술법	36
3. 말레이시아 기준법	37
4. 식품법	37
5. 증거법	38
제 2 절 계약법과 민법의 제조물책임 관련규정	39
1. 계약관계	39
2. 불법행위	41
제 3 절 소비자보호법의 제조물책임 관련 규정	42
1. 적용범위	43
2. 입증책임	45
3. 책임주체	46
4. 배상범위	47
5. 면책사유	48
6. 집 행	49
제 4 절 소 결	50

제 4 장 결론: 비교 및 시사점	53
참 고 문 헌	65
별 첨	67
별첨1: 태국의 제조물 책임법	69
별첨2: 말레이시아의 제조물 책임법	75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세계화의 동향 속에 미국, 중국, 일본 등 전통적인 교역 상대국 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동남아로도 한국 기업의 진출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곧 수출입 무역 통계 수치에서도 확인되는 바, 2012년 국가별 수출화물실적 상위 20위 대상국가 중 동남아시아 국가는 그 절반인 10개국에 달한다.¹⁾ 수출대상인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도 태국과 말레이시아는 한국의 주요 수출국으로서 그 규모가 2012년에만 각 90만불에 육박하는 수준이며, 또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태국과 말레이시아 양국은 2012년 수출 규모 상 각각 13와 14위에 해당하는 한국의 주요 수출 대상국이며, 특히 경쟁력 있는 현지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현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형식으로 산업 규모가 확장되고, 그러한 OEM과 더불어 한국 현지 생산품의 판매도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채널로 확대된 국제교역은 곧 상품의 제조와 판매가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하고, 이는 한국의 기업으로 하여금 제품을 구매하고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리와 제품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제조물책임법(Product Liability Law, PL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 한다.

「제조물책임법」이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그 제조물의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가 생겼을 경우 그 제조물의 제조, 판매 등에 관여한 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는 법을 말한다. 산업화와 기술의 발전으로 소비자가 사용하는 제품이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그에 따른 피해가 빈번해지고, 피해자의 구제방안이 필요해짐에

1) 관세청 수출입통계, http://www.customs.go.kr/kcsweb/user.tdf?a=user.newTradestatistics.NewTradestatisticsApp&c=1006&mc=STATS_INQU_TRADE_030

따라 유럽, 북미를 중심으로 제조물책임법이 발전하기 시작하였으며, 아시아에서도 소비자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1990년대를 전후로 도입되었다. 수출된 한국 제품이나 현지 제조된 한국 제품의 현지 판매 시, 판매한 제품에서 비롯할 수 있는 제조물 책임에 대한 법적 고찰과 가능한 법적 문제를 예방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주요 수출입 대상국에 비해 태국과 말레이시아를 포함한 여러 동남아시아 국가의 법제 연구 정도는 미미했다.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제조물책임법」이 독립법제로 제정되어 있는 태국과 소비자보호법제 내에 독립된 장으로 그 내용이 포함되어 적용되고 있는 말레이시아를 비교하며 제조물책임에 대한 법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법문번역 이상의 연구가 필요하다. 적극적으로 교역량이 늘어나고 중요한 상대국으로 부상되고 있는 동남아시아 신흥시장 중에서도 자국의 소비자와 기업의 보호를 적극적으로 입법 정책에 반영하는 국가의 관련 법제와 그 배경, 현황 등을 살펴보는 것은 향후 한국 기업 진출에 있어 예방적 법적 조치로 필요하다.

이에, 아시아 국가 간 법령 정보 공유의 장을 만들고 법제교류를 증진하고자 한국법제연구원 법제교류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법제교류지원사업은 2013년 아시아 소비자보호와 제조물책임을 주제로 다음과 같은 일련의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연구과제명	연구진	발간일	발간언어
A Comparative Study on Consumer Protection Legislation in China and South Korea	Jiyeon Choi, Yanping Lin, Xuxu He, Zhihong Hu, Siwen Gong, Lingjian Hu	2013. 8. 31	영문
A Comparative Study on Consumer Protection	Seoyoung Lee, Nanzaddorj	2013. 8. 31	영문

연구과제명	연구진	발간일	발간언어
Legislation in Mongolia and South Korea	Lundendorj, Ayush Ariunbold, Temuulen Bataa, Sodnom Doljin, Insook Yoo		
대만과 싱가포르의 제조물책임법제 연구	이서영	2013. 10. 31	국문

본 보고서에서는 아시아 신흥시장 중에서도 비교적 최근 소비자보호법을 개정하며 제조물책임규정을 법제화한 말레이시아의 소비자보호법과 동남아시아 신흥시장 중에서 유일하게 제조물책임법이 단독법으로 제정되어 있는 태국의 법제를 연구하여 법제교류지원사업 연구보고서 시리즈의 한 부분을 구성하며, 아시아의 법제 정보의 수집, 제공과 교류, 나아가 동남아 시장으로 교역을 확대하는 우리 산업에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태국과 말레이시아의 제조물책임규정을 비롯한 소비자보호법의 주요내용과 관련 법규의 분석을 주된 검토대상으로 하고, 문헌자료로는 태국과 말레이시아 법을 소개하는 2차 자료들을 활용하는 한편 양국의 법에 영향을 준 유럽과 미국의 「제조물책임법」을 참고로 한다. 각 나라의 제조물책임법제와 소비자보호법제 그리고 관련 민사법의 실제 적용내용과 사례를 연구하기 위해 태국 Chulalongkorn 대학 법대의 Sakda Thanitcul 교수와 말레이시아 국립대학 법과대학의 Aishah Bidin 교수의 자문을 얻었다.²⁾

2) Professor Sakda Thanitcul, Dean of the Faculty of Law, Chulalongkorn University, Thailand; Professor Aishah Bidin, Dean of the Faculty of Law, National University of

제1장 서론

연구의 방법으로는 양국의 법규를 살펴보고 해외 문헌을 분석하였으며, 앞에서 언급한 학계 전문가의 개별 자문 의견을 반영하였다. 연구 대상인 태국과 말레이시아 양국의 법문은 영문번역본을 참조하였으며, 제조물책임 법제를 별첨하였다.

제 2 장 태국의 제조물책임법제

제 1 절 개 관

태국 「소비자보호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은 20세기 초에 제정된 「민상법(Civil and Commercial Code: CCC)」인데, 영국 상법의 주요 내용과 「계약법」, 「불법행동법」, 「보험법」, 「회사법」 등 소비자보호에 관련된 법 조항을 담고 있다. 이 민상법의 내용을 각각의 법 분야에서 보다 자세히 규정하는 독립법(Acts)이 있고, 그 하위 법령이나 규칙³⁾ 등이 태국 법을 이루고 있다.

소비자보호를 다루는 독립법 중에서, 안전하지 않은 제품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법은 「소비자보호법(Consumer Protection Act B.E. 2599(1979))」, 「식품법(The Food Act B.E. 2522(1979))」, 「약품법(The Drug Act B.E. 2510(1967))」, 「의료기법(The Medical Device Act B.E. 2551(2008))」, 「산업제품기준법(The Industrial Product Standards Act B.E. 2535(1992))」 등이 있고, 제품에 의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적용되는 법으로 「제조물책임법(Unsafe Goods Liability Act BE 2551 (2008); a.k.a. Product Liability Act(2008))」과 「소비자소송법(Consumer Cases Act B.E. 2551(2008))」이 있다.

1. 소비자보호법

「소비자보호법」은 총리실 산하 소비자보호이사회를 두고 소비자의 권리 보호에 앞장서는데, 소비자보호이사회는 광고위원회, 상표위원회, 계약위원회를 설치하고 각각의 문제를 담당하게 한다. 이사회는 각각의

3) 왕령(Royal Decrees), 내각 규정(Ministerial Regulations), 통지(Notifications), 선언(Announcements), 정부령(Administrative rules)이나 규정(regulations) 등이 있다.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들에 대한 항소 공청회를 담당하게 되며, 제조업자로 하여금 제품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실험을 할 것을 강제할 권한을 가진다. 광고위원회는 물품에 대해 광고에 포함되어야 할 문구나 경고 등을 규정할 권한을 가지며 특정 제품에 대해 광고의 제한이나 전면 금지 등을 명할 수도 있다. 상표위원회는 제품의 상표에 소비자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태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수입제품과 「공장법(the Factories Act)」에 해당하는 모든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적용된다. 상표법에 부합하지 않는 상표를 부착하고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상표위원회가 상표의 수정이나 판매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계약위원회는 소비자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취득할 수 있거나 공정하지 않은 계약 조항을 넣은 계약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소비자보호법의 위반 시 벌칙은 1개월 징역형과 태국현지통화 100,000바트 (한화 약 330만원) 벌금형으로부터 5년 징역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데, 사업체의 위반 시 회사의 임원과 경영자도 징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식품법 · 약품법

「식품법」은 태국 식약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의 승인을 얻지 않고 식품의 품질에 대한 광고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거짓 광고를 엄격히 금하고 있다.⁴⁾ 「약품법」 또한 이와 유사하게 약품의 효능에 대한 광고는 반드시 관련 부처의 허가를 얻고 내각의 승인을 취득한 후 대중에 공개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특히 약품의 성능을 과장광고하는 것을 규제한다.⁵⁾ 본 규정을 위반할 경우 동법 124조에 의해 최대 태국현지통화 100,000바트 (한화 약 330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4) 식품법(the Food Act) 40조

5) 약품법(the Drug Act) 88조

있다. 「식품법」과 「약품법」에서 주 규제 대상이 되는 ‘광고(Advertisement)’는 「소비자보호법」에서의 정의를 따른다.

3. 의료기법

「의료기법」은 의료기 생산자, 수입업자, 판매자로 하여금 보건부 장관의 통지에 부합하는 상표와 안내서 등을 부착하도록 규정⁶⁾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한다. 특히 상표나 안내서 등에 과장되거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1년 미만의 징역이나 태국현지통화 100,000바트 (한화 약 330만원)미만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⁷⁾ 또한 「식품법」과 「약품법」의 경우와 동일하게 의료기의 광고에 있어서도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광고나 과장·거짓 광고를 규제하고 있다.⁸⁾ 이 법에서 제조물책임에 관련하여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의료기사용에 따른 소비자피해의 경우 생산자, 수입업자, 판매자 측이 의료기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생산자, 수입업자, 판매자가 이와 같은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피해가 의료기를 잘 못 사용한 소비자의 잘못 때문이거나 불가항력 때문이라는 것을 밝혀야 한다.

4. 산업기준법

「산업제품기준법」에 따르면 제조업자는 자발적으로 산업제품기준에 부합하게 제품을 만들고 인증을 받은 후 기준에 부합함을 나타내는 로고를 제품에 부착할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산업부에서 왕명으로 특정 제품에 한해 산업제품기준에 따를 것을 규정할 수도 있다. 그리하여 산업제품기준에 따라야 하는 제품으로 규정된 경우 산업부로부터 인증을 취득하지 않고는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할 수 없게 된다.

6) 의료기법(the Medical Device Act) 44조

7) 위의 법 103조

8) 위의 법 59조

인증을 취득하지 않고 산업제품기준 로고를 사용한 경우 적발시 3개월의 징역형이나 태국현지통화 100,000바트 (한화 약 330만원)에서 1,000,000바트 (한화 약 3천330만원)까지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다.

5. 제조물책임법의 제정

2008년 2월 13일 「제조물책임법(*Unsafe Goods Liability Act BE 2551 (2008)*; a.k.a. *Product Liability Act 2008*)」이 독립제정 되었고 동법은 2009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의 독립제정 전까지 태국의 제조물책임 사건은 법원에서 과실 등의 불법행동(torts)과 계약법(contract law)상의 계약위반 등에 주로 의거하여 법을 집행해왔기에 결함이 있는 제품에 의한 피해사례에 있어서도 책임 소재를 가리기에 쉽지 않았고, 생산자나 판매자의 책임을 입증한다 하더라도 국제 기준에 비해 배상액이 낮았기 때문에 제조물책임사건에 있어서는 태국이 소송에 유리한 국가라고 할 수 없었다. 이후 독립 제정된 「제조물책임법」이 이전까지는 없었던 ‘무과실책임’의 개념을 태국 소비자보호법에 도입하고 결함이 있는 제품에 의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폭넓은 보호와 배상을 제공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기에 일각에서는 제조물책임법 도입 이후 소송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직 큰 폭의 소송건수 상승은 찾아보기 힘들다. 다만, 그래도 그 보호의 폭과 배상의 정도가 넓어지고 커진 것은 사실이고, 법원을 통해 사건이 해결된 소송의 건수가 크게 늘지 않았을 뿐이지 분쟁사례는 늘어난 것이 사실이기에, 앞으로 「제조물책임법」의 적용과 활용이 소비자들에게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바, 종래의 법에서의 제조물책임 사건과 「제조물책임법」에서 다루어지는 제조물책임분쟁사건 등이 어떻게 다른지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 2 절 민상법의 제조물책임 관련규정

1. 계약 관계

태국의 「계약법」에 따르면 판매자는 제품의 결함을 인지하든 인지하지 않았던 상관없이 결함 있는 제품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어 있고⁹⁾, 소비자는 제품의 결함에 의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¹⁰⁾¹¹⁾ 제품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 피해 배상을 요구하기 전에 소비자는 계약을 취소하고 환불을 요구할 수도 있으며¹²⁾, 이 경우 계약 취소와 환불 요구가 이후 피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지도 않기에 계약을 취소하고 환불을 요구해서 배상을 받은 이후에도 제품의 결함에 의한 다른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조물책임 사건을 태국의 「계약법」에 근거하여 피해 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할 때, 가장 큰 단점은 오직 계약의 당사자인 소비자만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결함이 있는 제품에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피해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한 계약당사자가 아니라 제 3자라면 계약법에 근거해서는 소비자로서 판매자로부터의 피해 배상을 요구할 수가 없다.

(1) 면책사유

태국 「계약법」에 근거한 제조물책임 사건의 경우, 다음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함을 밝힐 수 있다면 판매자는 제품 결함에 대한 배상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9) 태국 민상법 472조

10) 위의 법 215조

11) 위의 법 222조에 따르면 소비자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피해는 두 종류로 나뉘는데, 계약의 위반에 의해 의례히 발생하는 피해와 판매자가 결함을 알고도 제품을 판매한 특별한 경우 발생한 피해가 있다.

12) 위의 법 387조, 391조

첫째, 소비자가 제품의 구매 당시 이미 제품의 결함 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일반적인 평범한 소비자가 일반적인 수준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제품의 결함을 알아챘음이 마땅한 경우, 둘째, 제품의 배달시 제품의 결함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제품을 수취한 경우, 셋째, 공개 경매에서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¹³⁾¹⁴⁾ 이 세 가지 조건 중 한 가지에 해당함을 밝히는 입증 책임은 판매자에 있다.

또한 제품의 결함으로 일어난 피해에 대해 소비자가 책임의 분담을 져야 하는 경우라면 그 분담의 정도와 그에 따른 배상액의 규모를 법원이 결정하고, 이를 판매자 책임과 배상액에 적용하여 경감하게 된다.¹⁵⁾ 이는 제품의 결함이 있었고 판매자가 결함이 있는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계약을 파기한 점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소비자의 잘못이 인정된다면 소비자로서 하여금 판매자와 함께 책임을 분담케 하는 것으로, 소비자는 제품의 결함뿐만 아니라 자신은 잘못이 없다는 것 까지 밝혀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2) 책임의 사전 면제 조항

이외에도 태국 「계약법」 상, 계약 단계에서 제품 결함에 의한 손실은 판매자의 책임이 아닌 것으로 판매자와 소비자가 사전에 합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판매자의 책임을 애초에 면제하는 것도 가능하다.¹⁶⁾ 다만 이와 같은 사전 면제 조항은 「불공정 계약조건법 (Unfair Contract Terms Act BE 2540 (1997))」상 조항이 계약당사자인 쌍방에 공정해야 그 법적 효력을 가진다. 그리고 그 조항의 공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그 사전 면제 조항이 인정되지 않고, 계약당사자인

13) 동법 473조

14) 위의 법 223조 예서는 또한 손해를 입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소비자의 모든 기여 사실 정도를 책임소재와 배상 정도를 측정하는 데 있어 법원으로 하여금 고려하게 한다.

15) 위의 법 223조

16) 위의 법 483조

판매자는 제품의 결함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판매 계약 체결 당시 제품의 결함에도 판매자가 구매 가격을 환불할 의무를 지지 않음을 계약서상에 미리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은 경우,¹⁷⁾ 계약 체결 이후에 판매자와 소비자가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제품의 결함에 의한 판매자의 구매가격 환불 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둘째, 판매자가 고의로 숨긴 사실로 인해 발생한 피해의 책임이나 판매자의 사기행위 또는 극도의 과실로 인한 피해의 책임은 계약 체결시 판매자와 소비자가 판매자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면제하겠다는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계약서상 판매자와 맺은 책임 제외 조항으로 면할 수 없다.¹⁸⁾ 셋째,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개인에게 미친 상해나 사망에 대한 책임은 판매자와 소비자가 사전에 합의한 판매자 책임 면제 조항의 적용에서 제외된다.¹⁹⁾ 이런 예외조항은 판매자와 소비자의 합의에 의해 판매자의 책임을 사전에 면제하는 조항을 무력화 할 수 있는 조항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에 대항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조항이다. 이처럼 판매자측에 더 위중한 책임을 지우는 조항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계약법상으로는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법상으로는 피해소비자의 자격 제한, 책임 분담, 계약상의 면책 조항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불법행위

불법행위 원칙에 기반 하여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의 배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의도적으로 혹은 과실로

17) 동법 484조

18) 위의 법 485조

19) 불공정 계약조항법 (Unfair Contract Terms Act BE 2540(1997))

인해 생명이나 신체에 ‘불법적인’ 상해를 입히거나 자유권이나 재산에 피해를 입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²⁰⁾, ‘불법적인’ 상해는 합법적인 상황에서 용인되는 상해²¹⁾가 아닌 상해를 말한다. ‘과실’은 민상법에서 정의되지 않았기에 형법상의 정의를 차용하여 사용한다. 형법에서 과실이란 같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이라면 기울었을 정도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의도하지 않게 해를 입히는 것을 말한다.²²⁾ 이와 같은 정도의 과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제조, 배급, 판매 등에서 다른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기울었을 정도의 주의를 제조자·배급자·판매자가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을 피해 소비자가 증명해야 한다. 이와 같은 증명은 제조자·배급자·판매자가 제품의 생산과 판매의 과정 중에서 과실을 행했다는 것을 밝혀야 하는 만큼 당사자인 제조자·배급자·판매자가 아닌 소비자는 관련 증거로의 접근성이 매우 낮은 것을 감안한다면 이와 같은 입증은 특히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피고의 과실과 관계없이 피해가 발생했다면 소는 성립하지 않고²³⁾, 원고가 피해 정도에 일조했다는 것을 밝힌다면 배상 정도가 감소할 수 있다²⁴⁾는 점이 피해 소비자에게는 배상을 청구하는 데 있어 불리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불법행위에 근거한 제조물책임 소송의 경우, 법원에서 사건의 경중과 관련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배상 정도와 방법을 결정하게 되는데,²⁵⁾ 배상은 제품의 가격과 발생한 피해의 배상, 수리비용, 의료비용, 급여의 배상뿐만 아니라 그 금액에 있어 매우 소액이지만 신체·정신

20) 태국 민상법 420조

21) 정당방위나 합법적 명령에 의해 발생한 상해 등을 합법적인 상황에서 용인되는 상해로 볼 수 있다.

22) 태국 형법 59조

23) 태국 민상법 217조, 439조

24) 위의 법 223조

25) 위의 법 438조

적 피해의 배상도 가능하다.²⁶⁾ 하지만 징벌적 배상이나 피해액의 몇 배로 배상액을 지급하도록 선고하는 일은 태국에서는 극히 드문 일이다.

근무 중 근무의 일환으로 직원이 불법행동을 저질렀다면 직원의 불법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고용주가 연대 책임을 지게 된다²⁷⁾는 점은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과실을 저지른 직원뿐만 아니라 고용주에게까지 연대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책임주체를 확장하여 배상액과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 고무적인 규정이지만, 사업자의 입장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되겠다. 태국 진출 한국 기업의 경우 역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규정이라 할 수 있다.

태국은 2008년 「제조물책임법」의 제정, 2009년 「제조물책임법」의 시행 이후 결함이 있는 제품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예전과 같이 불법 행동, 계약법뿐만 아니라 이제 제조물책임법에 의거해서도 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되어, 그 피해 배상을 청구하는 데 있어서 법적 근거가 더욱 다양해 졌으며 법에서 보장하는 피해 배상 청구의 정도도 넓어졌다. 이에 해외 사업체를 포함하여 모든 기업과 제조업체 등은 가장 큰 보호범위를 보장하는 제조물책임법이 태국 소비자의 권리를 얼마나 광범위하게 어떻게 보장하는지, 또 실제로 법의 적용과 집행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제 3 절 제조물책임법의 주요내용

1. 적용범위

제조물책임법에 의거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태국 「제조물 책임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2009년 2월 21일 이후 판매된 제품의 결

26) 위의 법 438조, 440조, 443조, 444조, 446조

27) 위의 법 425조

함으로 인한 피해로 한정하며,²⁸⁾ 제품의 결함과 피해를 인지한 때로부터 3년 이내, 혹은 제품을 구매한 시기로부터 10년 이내에 배상을 요구해야한다.²⁹⁾

「제조물책임법」상 ‘제품 (product)’이란 농산품과 전기를 포함하여 제조되거나 수입된 모든 제품으로 정의되어 그 적용 범위를 넓게 두었다.³⁰⁾ 각료규정(Ministerial Regulation 2010)에 예외로 정해진 건조 담배와 미탈곡쌀 등의 일부 농산물을 제외한 모든 농산품을 제조물책임법 상 제품으로 포함하는 것은 현재 농산품을 제조물책임법의 적용에서 배제한 한국 제조물책임법과 상이한 조항이지만, 유럽이나 미주 등에서 농산품도 제품으로 인식하는 것과 궤를 같이 한다.³¹⁾ 이와 같은 특정 농산품 이외에도 특정 의료기기도 같은 각료규정상 예외로 정해져있는데, 이렇게 몇몇 특정 제품과 산업을 「제조물책임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몇 가지 의미를 가진다.³²⁾

첫 번째, 이와 같은 제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태국 가정과 국가의 소득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여 산업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경제안정과 발전에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제품 결함의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의무도 국가의 주요한 목적이지만, 그와 더불어 국가의 경제에 있어 중요한 산업은 자칫 무분별한 소비자소송 등이 그

28) 태국 제조물책임법 15조 (Unsafe Goods Liability Act BE 2551 (2008), a.k.a. Product Liability Act 2008)

29) 동법 12조; 화학제품의 누적으로 신체에 해가 가해지는 경우나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피해를 인지하고 사업자의 책임을 알게된 때부터 3년 이내에 배상을 요구해야 하지만, 이는 제품을 구매한 때로부터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30) 위의 법 4조

31) 이와 관련된 연구로는 다음 논문이 있다. EU Amends Product Liability Directive to Include Agricultural Products, *International Law Update Jun99*, Vol. 5, p73; Product liability extension to primary agricultural products, David Jukes, *British Food Journal*, Vol. 101 Iss: 4,

32) ICLG TO; Product Liability 2011, p. 324

중요한 경제적 역할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경제 안정과 발전에 있어 우선순위를 차지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제외된 몇몇 특정 제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는 일반적으로 태국 「제조물책임법」에서 다루는 제품의 피해 사례와 상이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태국의 「제조물책임법」에서 주로 다루는 제품의 결함이 공산품의 안전성 문제라면 쌀 가공 농산품과 특정의료기기 등은 일반 소비자가 상해를 입고 배상을 요구하는 일반적인 공산품의 안전성 문제와는 성격이 다르기에 예외조항으로 구분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태국 「제조물책임법」이 제정되고 시행된 이후 몇 년이 지나 이제는 태국사회에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보호가 자리를 잡았고, 이에 일견 너무 비대해질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함으로써 제조물책임 사건들에 있어서 공정한 처리를 하고자 정부가 개입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태국의 「제조물책임법」은 안전하지 않은 제품에 대한 책임을 사업자에게 지우는 법으로, 제품이 신체, 생명, 건강, 정신,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경우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이 경우 ‘손해’는 제조나 디자인상의 결함으로 인한 것이거나 설명서의 부족, 보관 방법의 문제 등에 의해 야기된 것이어야 한다. 이와 같이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부상을 입은 사람이 사업자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소비자보호위원회 (Consumer Protection Board (CPB)) 나 소비자보호법에서 인증된 협회나 단체가 또한 부상을 입은 소비자 대신 배상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입증책임

태국 「제조물책임법」에서는 안전하지 못한 제품에 의해 야기된 부상에 대해서는 관련 사업자가 ‘무과실 책임(Strict Liability)’을 지기 때

문에 피고의 의도나 과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고 제품의 정상적인 사용이나 보관에 의해 부상이 발생했다는 사실이면 배상을 요구하기에 충분하다.³³⁾ 이렇게 제품의 정상적인 사용이나 보관을 했음에도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 증명되고 나면, 이후 입증의 책임은 피고인 사업자에게 전가된다. 사업자는 소비자가 제기하는 소에서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다음 중 한 가지를 입증해야 한다.³⁴⁾

첫째, 제품이 위험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결국 ‘안전하지 못한 제품에 의해 야기된 부상’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는 피해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둘째,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이미 그 제품의 위험성에 대해 알고 있었으나 그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제품을 사용하였다, 즉 위험을 감수했다는 것을 보일 수 있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셋째, 사업자가 제품과 함께 제공한 제품사용설명보관서 상의 지침과 상이한 보관이나 사용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보이면 된다. 다시 말해, 사업자는 제품의 안전한 사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설명 보관서에 지침으로 기재하였으나, 소비자가 이를 따르지 않고 설명 보관서에 기재된 사용 방법이나 보관 방법과 달리 임의로 제품을 조작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제품에 의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이다.

3. 책임주체

태국의 「제조물책임법」은 ‘사업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데 여기에서 사업자란 제품의 제조자, 수입업자, 판매자, 그리고 제조자나 수입자로 인식되는 모든 이들을 포함한다.³⁵⁾ 제품의 제작과 공급에 있어 연

33) 동법 5조, 6조

34) 위의 법 7조

35) 위의 법 4조

관된 모든 이들을 ‘사업자’로 정의하고 연대 책임의 주체로 세우는 바³⁶⁾, 이는 피해 소비자로 하여금 더 큰 배상액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을 찾아 소송을 하도록 유도할 수 하므로, 재정적으로 부유한 사업자일수록 동 법의 적용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제품의 제작과 공급에 관련된 모든 이들을 연대책임의 주체로 세울 수 있는데, 하청제조업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입증할 수 있다면 이와 같은 연대책임을 면할 수 있다.³⁷⁾

첫째, 제품의 결함이 원청업자의 설계나 지시의 부족으로 야기된 것임을 증명한다면 하청업자는 연대책임의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청업자가 원청업자가 제공한 설계에 따라 원청업자가 지시한 대로 제품을 제작하였고, 하청업자 임의로 변경한 부분이 없을 경우, 제품의 결함은 원청업자의 설계나 지시에 그 원인이 있음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는 하청업자는 제품의 제작에 기여했지만 원청업자와는 달리 그 제품의 하자로 인한 피해에 대한 연대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둘째, 부품제조업자의 경우 완성품의 설계, 구성, 설명서, 정보 등의 부족에 의해 결함이 야기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역시 연대책임의 의무에서 해방될 수 있다. 이는 하청업자의 경우와도 유사하여, 부품제조업자는 자신의 부품에는 하자가 없고 제품의 결함은 그 완성품의 설계나 구성, 설명서나 함께 제공된 제품에 대한 정보 등의 부족에 기인한 것임을 밝혀 제품결함으로 야기된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벗게 되는 것이다.

두 경우 모두와 같이 제품의 결함이 자신의 통제 밖에 있었으며 결함이 제품의 제작과 공급에 관련된 다른 사업자의 잘못으로 일어난

36) 하지만 태국 제조물책임법 8조에 따르면 제품의 디자인으로 인해 결함이 발생되었고 그와 같은 결함이 있는 디자인을 포함한 제품의 제작을 승인하고 지시한 자가 있다면, 단지 그와 같은 지시사항대로 제작만 맡았고 결함을 예상하지 못했던 제작자는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다.

37) 동법 8조

것임을 증명한다면 태국 제조물책임법 상 제품 결함에 관련된 제조업자라고 하더라도 제품 결함으로 인해 일어난 피해에 대한 연대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4. 배상범위

태국 「제조물책임법」에 의하면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가 신체나 정신적 상해를 입은 경우, 그 상해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함은 물론이고, 소비자의 사망 시 그 배우자와 자손은 가족·존속의 사망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³⁸⁾ 또한 제품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거나, 중과실로 인해 제품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제품의 결함을 인지한 후에도 시정행동을 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사업주로 하여금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³⁹⁾ 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은 서구의 징벌적 손해배상⁴⁰⁾에 비해 그 배상 규모가 작아 법규상 실제 손해배상액의 두 배를 넘지 못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법원에서 실제로 허용하는 경우도 드물다.

징벌적 손해배상만을 놓고 보자면 서구의 그것에 비해 법규상 약소하고 실제로 이행률도 미미하여 배상규모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겠으나, 그래도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개념이 최초로 도입되어 사업자를 벌함으로써 소비자의 안전에 더욱 무게를 준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고, 또 정신적 손해배상이나 가족에 대한 배상 등이 허용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제품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제조물책임법」에서 허용하는 배상 규모가 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하다 하겠다.

38) 동법 11조 (1)항

39) 위의 법 11조

40) 일반적으로 실제 피해액의 3배 이상까지 허용하기도 한다.

5. 면책사유

태국 「제조물책임법」상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여 소비자가 배상을 요구한다면,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 중 하나만 입증하여도 그 배상의 책임에서 면할 수 있다.⁴¹⁾

첫째, 제품이 위험하지 않다, 즉 안전하지 않은 제품이 아니다, 라는 것을 밝힌다면 배상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이는 제조물책임 상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원칙에 기대어 제품에 결함이 없다는 것을 밝히는 것으로, 입증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지만 이 조건만 밝힐 수 있다면 배상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 둘째, 제품의 결함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이미 제품이 안전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힌다면 사업자는 제품의 결함으로 야기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즉 제품의 결함을 알고도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소비자는 결함으로 얻은 피해를 감수하고 제품을 사용했다는 설명이 가능한 것이다. 셋째, 제품의 사용 설명서가 명확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제품의 사용설명서의 설명을 따르지 않아 부상이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할 경우에도 사업자는 피해배상의 책임에서 면해진다. 즉, 사업자는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용 설명서를 제공하였는데, 소비자가 이를 따르지 않고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피해를 일으킨 경우, 이는 사업자가 배상해야 하는 제품의 결함에 의한 피해배상의 범위를 넘어가는 것이다.

「계약법」상의 조항과는 다른 점으로, 「제조물책임법」 아래에서는 소비자와 제작자 사이에 부상이나 피해에 대해 미리 제작자의 책임을 면하는 합의를 하였더라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제작자의 책임을 면하는 근거가 될 수 없고 제작자는 여전히 결함에 의한 피해의 책임을

41) 동법 7조

져야 한다.⁴²⁾ 이는 「계약법」에서는 계약 주체 쌍방을 동등한 입장으로 보아 쌍방이 합의한 내용을 준수하는 데 반해 근본적으로 「제조물책임법」은 사업자보다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데 있어 열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쌍방이 맺은 합의는 원천적으로 공정할 수 없다는 전제가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에게 더 큰 보호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으며 사업자에게는 계약법과 다른 이 조항을 잘 살펴야 할 것이다.

6. 집 행

태국 「제조물책임법」 상 결함제품의 피해 소비자는 제품의 결함을 발견하고 책임을 물을 사업자의 신상정보를 알게 된 날 부터 3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⁴³⁾ 이는 「계약법」이나 불법행위에 기반을 둔 제조물책임소송에 비해 비교적 긴 시간으로 소비자에게 더욱 유리한 조건이라 할 수 있다.⁴⁴⁾ 「제조물책임법」과 「소비자소송절차법」상 제조물책임 소송은 당사자가 직접 제기할 수도 있고 소비자보호이사회에서 대리할 수도 있다. 보통 이와 같은 소송은 소장 접수에서 공판까지 8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소요되지만 각각의 사건의 복잡성이나 해당 법원의 업무량에 따라 그 기간은 달라질 수 있다. 법원에서 관장하는 중재나 법원 안팎에서 행해지는 조정, 협상에 의해 소송이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다.⁴⁵⁾

2009년 「제조물책임법」의 본격적인 시행 이후 태국에서는 외국계 기업을 상대로 하는 몇 가지 대표 소송 건이 있었다. 일본자동차회사

42) 위의 법 9조

43) 태국 민상법 474조

44) 계약법상 시효는 결함을 발견한 날로부터 1년 (민상법 474조), 불법행동에 기반한 소송의 시효는 과실의 유무와 피고의 정보를 알게된 날부터 1년, 그러나 과실이 행해진 날부터 10년을 넘을 수 없다 (민상법 448조)

45) ICLG TO: Product Liability 2011, p.323

를 상대로 사고 시 에어백이나 안전벨트의 오작동을 문제 삼은 건도 있고, 상한 우유나 음료 내 이물질을 이유로 제조회사에 배상을 청구한 것도 있다. 음료병뚜껑을 여는 순간 병이 폭발해서 소비자가 다쳐 음료제조업체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한 경우도 있었다.⁴⁶⁾ 하지만 이 모든 사건들이 법원에서 다루어지기보다 기업이미지 실추를 걱정하고 선례를 남기기 꺼려하는 대기업의 문화로 말미암아 합의로 끝났기 때문에 법원의 최종판결이 존재하지 않는다. 법원에서 실제 법의 적용을 얼마나 엄밀하게 하는가 하는 것을 실제 판례로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조물책임법」의 시행 이후로 피해 소비자의 적극적인 배상요구가 가능하고, 또한 이런 권리의 보장이 간접적으로 합의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 4 절 소 결

현재까지 태국 소비자보호소 (Consumer Protection Agency)에 가장 피해 사례가 많이 신고된 산업으로는 식품, 의약, 미용, 화학제품 등이 있지만, 이런 신고사례들이 실제로 제조사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었다. 그 이유로는 「제조물책임법」의 제정과 시행 이전까지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의 배상에 비해 소송을 제기하는 데 드는 비용이 너무 높은 것을 들 수 있겠다.

태국은 독립 「제조물책임법」의 제정과 「소비자보호법」으로 말미암아 최근 들어 소를 제기하기에 소비자에게 유리한 곳이 되었고 이론적으로는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배상의 규모가 상당히 늘어나고 입증 부담도 많이 줄어들어 제조물책임소송의 수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직 우려했던 대로 소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상당수의 소송이 외국계 대기

46) Sakda Thanitcul, 자문의견서

업을 상대로 시작되었음을 볼 수 있고, 그 중 대부분이 합의로 끝난 것을 보는데 제조물책임과 소비자보호에 있어 태국이 법적으로나마 국제적인 수준의 기준을 세우고 이를 준수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제품 결함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 이전보다 쉽게 제조사나 판매사에게 책임을 묻고자 하고, 또 이러한 소비자의 움직임에 사업자는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처하고자 소송을 통해 해결하기보다 합의로 원만하게 사건을 조기에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태국에 완제품을 수출하거나 OEM의 형식으로 제품을 현지에서 제조, 판매하는 사업자는 「제조물책임법」의 제정 이전보다 더욱 관련 법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제 3 장 말레이시아의 제조물책임법제

제 1 절 개 관

영국의 식민지였던 말레이시아는 1957년 독립 이후에도 영국 법률 체계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말레이시아 「민법(the Civil Law Act, CLA)」 3장에서는 말레이시아 각 지역 법원에서 각기 영국의 몇 년도 어떤 법을 적용해야하는지 규정하고 있다.⁴⁷⁾ 이렇게 일반적으로 영국의 관습법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제조물책임에 대한 사항은 「소비자보호법(Consumer Protection Act 1999)」이외에도 「제품판매법(Sale of Goods Act 1957)」, 「거래기술법(Trade Description Act 1972)」, 「말레이시아 기준법(Standards of Malaysia Act 1996)」, 「식품법 (Food Act 1983)」, 「증거법(Evidence Act 1950)」, 「계약법(Contracts Act 1950)」등에서 특정하여 다루고 있다. 이 중에서도 「제품판매법」과 「거래기술법」은 「계약법」에 의거해 제조물 책임의 여부를 분석할 때에 함께 근거로 사용되며, 「증거법」은 모든 법제의 절차상에 있어 입증의 의무의 기본을 이룬다. 또한 제조물책임에 관련된 다른 법으로 「생물학적안정성법(Biosafety Act 2007)」⁴⁸⁾도 있다.

1. 제품판매법

소비자가 판매자에게 사고자 하는 제품의 사용 목적을 알려준 경우, 제품에 대한 판매자의 지식에 기대어 볼 때 제품은 소비자가 이루고자

47) CLA Section 3, 말레이시아 현행법 내의 다른 법 조항의 영향이나 적용이 특별히 규정되어있지 않은 경우라면, 말레이시아 법원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법을 적용해야 한다. 첫째, 서말레이시아 지역(West Malaysia)에서는 영국에서 1956년 4월 7일에 집행된 관습법을 따를 것, 둘째, 사바 지역(Sabah)에서는 영국에서 1951년 12월 1일에 집행된 관습법과 그 적용을 따를 것, 셋째, 사라왁 지역(Sarawak)에서는 1949년 12월 12일 영국에서 적용된 관습법을 따를 것, 으로 규정한다.

48) 생물학적안정성법 (Biosafety Act 2007, Act 678)

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⁴⁹⁾ 이것은 이어지는 조항의 ‘적상품질(Merchantable Quality)’과도 연결되는 것인데, 「제품판매법」에서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은 그 제품이 ‘적상품질’임을 의미하는 것으로,⁵⁰⁾ 이후에 소비자가 제품의 품질이 그에 못 미친다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제품판매법」은 판매계약에 명시된 제품의 설명에 실제 제품이 부합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⁵¹⁾ 이는 판례에서 제품이 적상품질을 만족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품의 설명과도 일치할 것으로 결정한 바⁵²⁾가 있는 등 제품의 품질에 있어 아주 엄격히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제품판매법에서 특이할 사항으로는 제품의 판매가 샘플제품을 통해 결정된 경우, 실제 제품의 품질이 샘플제품과 동일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⁵³⁾

2. 거래기술법

말레이시아 전역에 걸쳐 적용되는 「거래기술법」 4조 (1)항에서 ‘거래기술’을 ‘제품의 성질이나 지정, 품질, 크기, 목적, 강도, 정확도 등에 대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어떤 방법으로든 표시하는 것’으로 정의하며, 제품에 대해 거짓된 기술을 금지함은 물론, 거짓 정보로 기술된 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할 제안을 하는 것도 금지한다.⁵⁴⁾ 판례에 따르면 거짓된 정보가 기술된 제품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형법상의 책임을 지게 하며 무과실책임을 적용하게 되므로,⁵⁵⁾ 제조자나 판매자 모두 광고나 다른 매체를 통해 제품에 대해 기술되는 내용이 실제와 같도록 주의해야 한다.

49) 제품판매법 16조 (1)항 (a)목

50) 위의 법 16조 (1)항 (b)목

51) 위의 법 15조

52) Arcos Ltd. v. EA Ronaansen & Son [1933] ALL ER 646

53) 위의 법 17조 (2)항

54) 거래기술법 4조 (1)항, 3조

55) Ang Seng Ho v. Public Prosecutor [1991] 2 CLJ 986, TDA Section 3(1)(b)

3. 말레이시아 기준법

「말레이시아 기준법」은 재정부 산하의 기준·산업연구원을 설치하여 연구원으로 하여금 산업 전반에 걸쳐 생산되는 제품이 안전하며 목적에 부합하도록 기준을 설정하도록 한다.⁵⁶⁾ 동 연구원은 제품의 검사와 인증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제품의 제조사는 기준법에 의거하여 제품을 제작하여야 하는 의무는 없기 때문에 제품을 제출하여 검사를 받고 승인을 받아야 할 의무 또한 없다.

4. 식품법

섭취에 적합하지 않은 음식을 섭취함에 기인하여 발생한 손해나 피해의 경우 「식품법」의 적용을 받는데 개봉하지 않은 음식물에 이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면 제조사가 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⁵⁷⁾ 하지만 입증책임은 소비자측에 있고,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제조과정에서 일어난 특정과실을 입증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과실을 입증한다고 하더라도 제조자는 고의로 발생한 잘못이 아니며 제조자로서는 가능한 모든 절차를 밟아서 제품이 「식품법」과 규정에 부합하도록 노력했다는 사실을 보인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⁵⁸⁾ 전반적으로 「식품법」으로 제조사에게 책임을 물게 하는 것은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며, 이러한 사유 이외에도 말레이시아 법원이 소비자에게 거액의 배상액을 선고하기 꺼려하는 점,

56) SIRIM Berhad Incorporated 라는 이름으로 기준·산업 연구원을 설치한다. 이전의 이름은 “말레이시아 기준과 산업연구원(Standards and Industrial Resesarch Institute of Malaysia)” 이다.

57) 식품법 28조. Manager, Tuborg (M) Sdn Bhd v. Public Prosecutor [1990] 1 CLJ 790 관례에 이와 같은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었다.

58) 위의 법 23조

실제로도 식품으로 인한 피해가 소송을 제기할 만큼 큰 경우가 드물다는 점 등으로 말미암아 「식품법」으로 소송에 이른 사건은 드물다.⁵⁹⁾

5. 증거법

민사 소송에 있어서 입증 책임은 원고가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즉 소비자가 제조사나 판매자를 상대로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에서는 소비자가 그 입증 책임을 지고 제조사나 판매자의 과실을 보여야 한다. 제조 과정에 관여하지 않은 소비자가 제조 과정에서 일어난 제조자의 특정과실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은데, 이에 「제조물책임법」에서는 무과실책임의 원칙에 입각하여 입증 책임을 피고인 제조사나 판매자에게 넘길 수 있다.

「소비자보호법」, 「계약법」과 「제품판매법」, 그리고 불법행동에 근거한 민사적 책임을 묻는 방법 이외에도, 제품에 대한 소유권의 침해에 대한 관점에서 그 책임을 형사적으로 묻는 것도 말레이시아 형법상 가능하다. 하지만 형법상 규정되는 제조물책임 관련 조항들은 절도, 부당취득, 형사적 신뢰파기, 범죄성 침해 등 민사 규정에 비해 입증책임이 높은 몇 가지에 한정된다.⁶⁰⁾

2010년에는 말레이시아의 「소비자보호법」이 개정되었는데, 개정 「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와 판매자 사이의 계약에 있어서 불공정한 조건으로 소비자의 권리가 제한되는 것을 막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계약에 있어 계약 당사자 한 쪽을 면책하는 규정을 쌍방의 합의하에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는데, 이런 규정이 과연 쌍방이 동일한 조건에서 자유로이 합의한 것인가 하는 것은 이전에도 체결된 계약이 이행 가능한 계약인가 하는 점을 판단하고자 할 때에 고려할

59) Jocelyn Kellam, Product Liability in the Asia-Pacific, p.286

60) 형법 제 17장 378-462조 (Chapter XVII, Malaysian Penal Code, Section 378 - 462)

중요한 사항이었다. 하지만 2010년 개정은 계약의 쌍방이 동일한 조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는가 하는 문제를 조금 더 자세히, 계약에 있어 대부분의 경우 약자인 소비자의 입장에서 규정하여 계약조항이 절차상, 내용상으로 합당한가를 판별하게끔 하고 있다.⁶¹⁾ 이는 소비자권리증진에 있어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볼 수 있고, 제 10장 제조물책임규정과 다른 장에 있긴 하지만 「소비자보호법」 전체에 적용되는 만큼 계약관계에 의거, 제조물책임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 2 절 계약법과 민법의 제조물책임 관련규정

1. 계약관계

제품의 결함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말레이시아 「계약법」에 근거해 그 손해 배상을 요구할 경우, 피해를 야기한 계약상의 위반사실만 있다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판매자의 사기나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없으므로 소비자에게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역시 오직 계약의 당사자만이 피해배상을 청구할 권한을 갖는다는 것이 피해를 입었지만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다수의 소비자를 이와 같은 배상의 방법에서 배제한다는 단점이 있다.

말레이시아의 「계약법」이나 「제품판매법」에서는 판매자와 소비자가 책임소재를 한정하는 문구를 계약서에 포함하고 사전에 소비자로 하여금 동의하게 함으로써 차후 발생할 수 있는 결함제품에 대한 판매자의 책임을 미리 면할 수 있었다. 이는 소비자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이전에 동의한 제한문구에 의해 배상을 요구하지 못하게 작용했는데, 이는 「소비자보호법」 10장에서 「소비자

61) 소비자보호법 제 3A장 24C조, 24D 조

보호법」 조항을 「계약법」이나 「제품판매법」상의 책임제한동의조항 등보다 우위에 둠으로써 해결되었다.⁶²⁾ 즉, 계약서상 판매자나 생산자의 책임을 면한다는 조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제조물책임규정상의 책임이 그에 앞서므로 판매자나 생산자의 책임이 계약에 명시된 대로 완전히 면해졌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소비자의 권리 보호에 있어 크게 발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⁶³⁾ 이전까지 항상 제품의 설명서 등에 기계적으로 제작자의 책임을 제한하거나 면하는 문구를 넣어 판매해 온 관례가 이 조항과 상충함을 생각한다면, 앞으로 법원이 현실과 법규의 상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되는 바이다.

말레이시아의 「제품판매법」에 기반을 두어 소비자가 판매자를 상대로 제품의 결함에 의한 손해 배상의 소를 제기한다면, 판매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 중 한 가지를 충족하여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⁶⁴⁾

첫째, 「제품판매법」상 ‘제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 제품판매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그에 기반한 책임을 질 이유가 없어진다. 둘째, 판매자의 사업상 판매 제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즉, 판매자가 사업상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제품의 설명에 해당하는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인 경우 제품판매법상 판매자는 그와 같은 특별제품에 대해서는 결함에 대해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제품이 특허명(patent name)이나 상품명(trade name)으로 팔린 경우에도 판매자는 그 결함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고, 넷째, 판매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소비자에게 이미 제품의 결함에 대해 고지한 경우에도 판매자는 그 고지한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의 피해에 관해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 다섯째, 판매계약의 체결 이전에 제품에 결함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62) 소비자보호법 71조

63) Gregory L. Fowler, *International Product Liability Law, a Worldwide Desk Reference*, Aspatore Books, 2004, p.480

64) 제품판매법

수 있는 정도의 검사가 이루어진 경우, 그리하여 검사 결과에 따라 제품에 결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판매가 이루어진 경우, 판매자는 제품의 결함에 의해 이후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배상할 의무가 없다. 마지막으로 소비자가 입은 피해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당연히 판매자는 그 피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는 이후에 소개될 말레이시아 「소비자보호법」 내 제조물책임 규정상에 있는 판매자의 면책 사유와 일치 하지 않고, 그 성질상 계약의 주체와 계약 시 고지 등을 강조하는 바, 「계약법」 상 다른 계약파기의 경우에 적용되는 면책사유와 유사하다 할 수 있겠다.

2. 불법행위

제품의 결함에 의해 신체의 상해나 재산의 손실을 겪은 경우, 피해 소비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판매자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결함 제품에 의해 야기된 신체상의 상해나 재산상의 손실만을 배상하고 결함제품 자체는 배상하지 않는 단점을 지니고 있지만, 계약의 주체가 아니라든가 다른 이유로 「계약법」으로 결함제품의 책임을 제조자에게 물을 수 없을 경우 이 법적 근거를 이용할 수 있겠다. 이는 영국 판례법에서 유래한 판례법에 기대어 해석하여,⁶⁵⁾ 결함 있는 제품의 제작자가 자신의 행동이 피해를 줄 것이라고 예측될 때에는 그에 반하여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해야 한다는 기준 하에 책임 소재를 가린다. 즉, 소비자는 제품의 생산자는 소비자에게 주의의무를 가지나 그 주의 의무를 위반하였으며, 그 위반 사실 때문에 소비자는 피해를 입었다는 세 가지를 입증해야 한다. 이와 같이 영국 판례법이 적용된 말레이시아의 판례로는 사라왁 지방정부의 가스배관 설치 시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사고의 건이 있다.⁶⁶⁾

65) Donoghue v. Stevenson [1932] AC85

66) Takong Tabari v. Government of Sarawak (1996) 5 MLJ 435; Fowler, 앞의 책, 재

제 3 절 소비자보호법의 제조물책임 관련 규정

말레이시아의 「소비자보호법(Consumer Protection Act)」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물품과 서비스의 교환에 적용된다.⁶⁷⁾ 동법에서 ‘소비자’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⁶⁸⁾

첫째, 일반적으로 가내용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취득하거나 사용한 자를 소비자의 범주에 둔다. 그리고 둘째로 다음 세 가지 목적 중 한 가지 이상을 만족하여 제품이나 서비스를 취득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자를 역시 소비자의 범주에 두는데, 이 세 가지 목적은 ①다른 형태의 상업적 교환을 위해 재공급하기 위해 취득했거나, ②다른 제품의 생산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 취득했거나, 혹은 ③ 다른 제품의 수리를 위해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경우를 가리킨다. 즉, 자신이 직접 가내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취득하거나 사용한 경우가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다른 제품의 생산, 수리나 상업적 교환 등을 목적으로 제품을 취득하거나 사용한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소비할 목적이 아니므로 소비자의 범주에서 제외함을 알 수 있다.

즉, 개인적이거나 가내의 사용 목적으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취득하거나 사용한 경우 ‘소비자’의 정의에 해당되어 「소비자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이는 또한 제품을 판매자로부터 직접 구매했거나 서비스를 위해 피고용인을 직접 고용한 사람이 아닌 경우에도 「소비자보호법」상 보호대상이 된다는 것을 뜻하는데, 이는 계약

인용

67) 소비자보호법 2조 (1)항

68) 위의 법 3조(1)항

의 당사자가 아니면 법적용이 되지 않던 계약법과 큰 차이를 이룬다.

말레이시아 「소비자보호법」 제10장(Chapter X)은 소비자보호의 측면에서도 특히 제조물책임에 대해 자세히 논의하고 있다. 제 10장 68조 2항에 따르면 구매자가 아닌 제품이 소비자도 피해를 입었다면 계약 관계 없이도 「소비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제 10장 「제조물책임법」은 서비스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 「소비자보호법」 다른 장들과의 차이점이다.

1. 적용범위

(1) 제조물의 정의

말레이시아 「소비자보호법」 10장 65조는 제조물 (“product”)를 상품(goods) 뿐만 아니라 상품을 구성하는 원자재나 부품도 모두 제조물로 정의한다.⁶⁹⁾ 이 정의에 따르면 완성된 제품으로써의 상품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이나 원재료 등도 독립적으로 제조물로 간주되므로 각각의 부품이나 원재료의 결함 시에도 제조물책임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농산물(agricultural produce)의 경우 농산물에 결함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어떤 제조과정을 거치지 않고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공급한 경우 제조물책임규정은 적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힘으로써⁷⁰⁾, 최근 「제조물책임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해 농산물을 포함하도록 한 다른 국가⁷¹⁾들과 대비 점을 이룬다.

제 10장 제조물책임규정에서는 그 적용 대상을 ‘상품’으로 제한함으로써 계약에 의해 제공되는 권리나 혜택으로 정의된 ‘서비스’는 제조

69) 동법 제10장 65조.

70) 위의 법 68조 (5)항

71) EU Amends Product Liability Directive to Include Agricultural Products, International Law Update Jun99, Vol. 5, p73; Product liability extension to primary agricultural products, David Jukes, British Food Journal, Vol. 101 Iss: 4

물책임규정에서 배제하였다.⁷²⁾ 다만, ‘서비스’는 동법 1장 3항에서 ‘계약에 의해 제공되는 권리나 혜택’ 등으로 정의된 바,⁷³⁾ 서비스 자체는 제품으로 간주되지 않아 제조물책임규정의 대상이 아니지만 서비스를 위해 공급된 제품은 제조물책임규정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겠다.

말레이시아 「소비자보호법」상 ‘상품’은 개인적으로, 가내사용 목적으로 구매하거나 사용한 상품⁷⁴⁾을 말하는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농산품은 제조물책임의 대상에서 제외하면서도 상품의 범주에 동·식물은 포함하는 것이 또한 특징적이라 하겠다.

(2) 결함의 정의

말레이시아 「소비자보호법」 제 10장 제조물책임규정 67항은 ‘결함’을 ‘일반인이 예상할 수 있는 정도의 안전도에 못 미침’으로 정의하고 있다.⁷⁵⁾ 그러면 과연 일반인이 어느 정도의 안전도를 예상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는 데에는 제품의 제작과 사용에 관련된 모든 연관된 사항을 고려하도록 하는데,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제품이 홍보된 방법과 목적, 제품의 외양, 제품에 관련된 마크의 사용, 제품을 사용 시나 미사용 시 관련 지침이나 경고의 유무, 제품의 적절한 사용처, 판매자로부터 소비자에게로 제품이 제공된 시간 등이 있다.⁷⁶⁾

말레이시아 정부는 제품의 시험, 인증, 제품별 기준 설립과 발전, 국제기준의 인식 등을 위해 말레이시아 기준산업연구소 (the Standard and Industrial Research Institute of Malaysia, SIRIM)를 설립했다.⁷⁷⁾ 이

72) 동법 3조

73) 위의 법 3조

74) 위의 법 3조

75) 위의 법 67조

76) 위의 법 67조 (2)항

77) Fowler, 앞의 책, p.481

는 정부에서 제품의 안전성 기준을 정하고 시험하기 위해 만든 연구소이니 만큼, 만약 이 연구소에서 시험을 통해 인증을 받았으나 이후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제품이 있다면 면책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지침이 내려진 바 없고 판례도 없기에 향후 연구와 실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2. 입증책임

말레이시아 「증거법(Evidence Act 1950)」은 소송 시 법원에서 채택되는 증거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불법행동에 기초한 제조물책임소송의 경우 소비자는 결함이 있는 제품은 제시할 수 있지만, 그 제품에 대한 정보 접근성은 피고인 생산자나 판매자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생산자가 제품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내기 힘들 수밖에 없다. 하지만 「소비자보호법」 제정, 특히 제 10장 제조물책임 규정의 제정과 함께 무과실책임(‘strict liability’)의 개념이 도입되었고,⁷⁸⁾ 무과실책임의 경우에는 결함이 있는 제품만으로도 입증 책임이 다해진다.⁷⁹⁾ 무과실책임사건의 경우, 제품의 결함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먼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후에는 제품의 제조사나 판매자 등의 피고 측에게 입증 책임이 전가되고, 피고 측은 책임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 중 하나 이상을 보여야 할 책임을 지게 된다.

첫째, 소비자가 결함이 있다고 주장하는 제품이 제조물 책임규정상 의 ‘제품’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둘째, 소비자가 입은 피해가 사실 제품의 사용에 의해 야기된 것이 아닌 경우, 셋째, 피고는 「소비

78) Jocelyn Kellam, 앞의 책, p.287

79) 과실 추정칙 (the principle of *res ipsa loquitur*)

자보호법」상 ‘제조자’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넷째, 제품이 「소비자보호법」상 정의하는 결함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 다섯째, 소비자의 피해의 범위가 소비자의 죽음 등 인명의 피해나 손해가 아닌 금전적 손해에 국한된 경우, 여섯째, 소비자의 피해가 결함이 있는 그 제품에 국한되고 제품 이외에 소비자의 사유재산에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등 중 한 가지 이상을 만족할 경우 피고는 그 입증책임을 다 하여 제조물책임 사건에 있어 소비자가 입은 피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과실에 기반 한 불법행동 소송의 경우라면 피해를 주장하는 소비자가 피고의 과실까지 모두 입증해야하는데 반해 말레이시아 「소비자보호법」 내 제조물책임 규정에 의거하여 제기되는 무과실책임 소송의 경우 소비자의 입증 책임이 현저히 제품 제조사·판매자 등에게 전가되어 소비자가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제조물책임규정에 따를 때에 현저히 쉬워짐을 알 수 있다.

3. 책임주체

말레이시아 「소비자보호법」의 제조물책임규정에서 결함이 있는 제품의 책임을 제품의 생산자이거나, 자신을 생산자로 표지한 자이거나, 아니면 제품을 말레이시아로 제품을 수입해 온 자라면 제품의 결함에 의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져야 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⁸⁰⁾ 여기에서 ‘생산자’란 제품을 만든 사람이거나, 추출하거나 습득하거나, 제품의 본질적 형질을 만들어 낸 사람을 뜻한다.⁸¹⁾ 이같이 생산자를 넓게 정의함은 생산의 전 과정에 참여한 사람을 모두 포함할 수 있게 하여 제품의 결함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대상을 넓힘으로써 배상을 용의하게 하고자 함이라 볼 수 있겠다.

80) 소비자보호법 68조 (1)항

81) 위의 법 66조 (1)항

제품의 결함으로 손해를 입은 소비자의 경우 손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적절한 시간 이내에 제품의 공급자에게 제품의 책임 주체가 되는 자의 신원을 알려주도록 요구할 수 있다.⁸²⁾ 이 때 적절한 시간 이내에 이와 같은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공급자가 소비자가 겪은 손괴의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⁸³⁾ 이는 한국 「제조물책임법」 제 3조 ②항의 제조물의 공급자가 제조물의 제조자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규정과 유사한데, 두 법 모두 피해자인 소비자보다 제조자의 신원을 파악하는 데에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공급자에게 소비자에게 협조할 것을 유도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배상을 받는 것을 원활히 하게 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겠다.

4. 배상범위

결함이 있는 제품에 대한 손해 배상은 기본적으로 제품의 교환이나 반품 환불 등이 주된 반면, 말레이시아 「소비자보호법」의 10장 「제조물책임법」에서 과실에 대한 책임이나 절대책임은 주로 신체의 위해에 관한 것이다. 그러므로 소비자의 죽음이나 상해가 동법이 방지하고자 하는 주된 목적이 된다. 피해 발생 시 소비자가 경제적인 배상을 구하는 경우, 말레이시아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⁸⁴⁾

첫째, 피고는 결함이 있는 제품의 사용으로 야기될 배상책임을 알고도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그 책임을 자처했는지, 둘째, 신체의 위해 등의 피해가 제품의 사용 시 예측 가능한 것이었는지 와 더불어 소비자 와 피고의 관계는 피고에게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만

82) 동법 68조 (2)항

83) 위의 법 68조 (4)항

84) Commissioners of Customs and Excise v. Barclays Bank [2006] 4All ER 256; KGV & Associate Sdn Bhd v. The co-operative Central Bank Ltd [2006] 5 MLJ 513; Jocelyn Kellam, Product Liability in the Asia-Pacific, the Federation Press, 2009, p.291
재인용

کم 밀접했는지 와 피고에게 책임을 묻게 되는 상황은 공정하다고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셋째, 사건의 정황을 현존하는 판례에 비추어 이미 그 책임 의무가 입증된 사건의 정황과 비교했을 때 동일한 수준인지, 등의 기준을 가지고 법원은 사건을 검토하고 판단하도록 한다. 이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되 법원은 또한 배상의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각각의 사건은 고유의 정황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⁸⁵⁾ 또, 배상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서 결함이 있는 제품이나 그와 관련한 배상은 제외된다.⁸⁶⁾ 즉 소비자는 결함 제품만큼의 경제적 손실을 감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5. 면책사유

말레이시아 「소비자보호법」 내 제조물책임규정상 제조자는 다음과 같은 조항 중 한 가지 이상을 만족한다면 제조물책임의 사건에서 제품의 결함과 그로 인해 소비자에게 발생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⁸⁷⁾

첫째, 제품의 결함은 제품을 제조함에 있어서 규정하는 법을 준수함에 따라 발생한 결함인 경우 제조자는 제조물책임법 상의 피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둘째, 제조자가 다른 사람에게 결함이 있는 제품을 인계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경우에도 제조물의 결함에 기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배상할 의무를 지지 않을 수 있다. 즉, 제조자가 판매인 혹은 소비자 등에게 제품을 인계할 당시에는 제조물에 결함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셋째, 소비자가 배상을 요구하는 손해가 발생한 시점에는 제품에 결함이 없었다는 것을 보이는 경우에도

85) KGV & Associate Sdn Bhd v. The co-operative Central Bank Ltd [2006] 5 MLJ 513; Jocelyn Kellam, Product Liability in the Asia-Pacific, the Federation Press, 2009, p.291 재인용

86) 소비자보호법 69조 (1)항

87) 위의 법 72조 (1)항

제조자는 그 배상책임에서 면해질 수 있다. 즉 피해와 제품의 결함이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넷째, 제품의 결함으로 피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결함이 제조자로서는 과학기술적 수준의 미비로 사전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준이 아니었다는 이유를 들 수 있다면 역시 피해배상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즉 제조자가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할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제품의 결함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 책임 면제의 사유가 된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제조자는 완제품에 들어가는 부품의 제조를 맡았고, 제품의 결함은 부품의 결함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완제품의 결함으로, 그 완제품의 디자인상의 결함이라든지 등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배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

제조물책임의 소송 시 피고가 원고의 피해는 피고가 아닌 제 3자의 책임이었다는 것을 주장하여 피고가 제 3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결함이 있는 제품을 생산자가 중간상인에게 제공하고 중간상인이 소비자에게 판매한 경우, 소비자가 그 제품으로 상해를 입어 판매자인 중간상인을 제소한다면 중간 상인은 생산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 자신은 면책되고자 할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의 피해가 그 제 3자의 과실이 원인인 경우 원 소송의 피고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있겠지만, 만약 그 제 3자의 과실이 일부 원인이며 피고의 잘못 또한 피해에 일조했다고 판단된다면 이는 피고의 면책 사유로 작용하기보다 제 3자를 함께 공동 피고로 포함하는 형태로 바뀌게 될 것이다.

6. 집 행

「소비자보호법」의 제정과 함께 설립된 말레이시아 소비자청구법원 (Malaysian Tribunal for Consumer Claim)은 「소비자보호법」상의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 요구를 할 수 있는 법원이다. 제품의 사용으로 피

해를 입은 소비자는 판매자나 제조자 등을 상대로 말레이시아 소비자 청구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후에는 법원의 절차를 계속 따르거나 피고와 중재와 합의 등의 소송 외 분쟁해결 방법을 모색할 수도 있다.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제조물책임소송의 경우 국제계약이나 무역상의 계약조항위반에 기초하여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고, 아니면 중재나 화의 등을 통해 소송을 피할 수도 있다. 쿠알라룸푸르 지역중재센터(Kuala Lumpur Regional Center of Arbitration, KLRCA)는 아시아 아프리카 법률상담기구 (Asian-African Legal Consultative Organization, AALCO) 의 총재로부터 중재의 권한을 위임받고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아 운영되는 NGO인데, UNCITRAL 중재규칙 등을 도입하여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하는 국제분쟁에 있어 중재를 담당하고 있다.

같은 사건에 대해 다른 나라에서 이미 판결이 난 경우라면, 말레이시아법상 상호인정국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그 상대국의 판결을 인정한다.⁸⁸⁾ 동법상 타국의 판결을 말레이시아 국내에서 인정하기 위해서는 판결을 말레이시아 법원에 등록해야 하는데, 등록은 타국의 판결 날로부터 6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외국에서 이루어진 중재의 경우, 중재에 대한 뉴욕협약⁸⁹⁾의 회원국으로써 말레이시아는 중재 결과를 인정한다.⁹⁰⁾

제 4 절 소 결

말레이시아의 제조물책임규정은 이미 1957년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제품판매법」에 그 주요조항이 포함되어 법규로 정해졌기에 이

88) 상호 판결 이행법 (the Reciprocal Enforcement of Judgments Act 1958)

89) 외국 중재 결과 인정과 이행에 대한 뉴욕 협약 (the New York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90) Kellam, 앞의 책, p313

후 현재까지 꾸준히 발전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다양한 부류의 소비자에게 모든 피해배상을 보장하지 않기에 제조물책임규정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여전히 제조물책임규정의 제정 이전부터 사용되어 오던 계약이나 불법행동의 법규가 더 적절하다 할 수 있다. 제조물책임에 있어 배상의 범위가 사망, 상해, 사유재산에 대한 것에 한정하는 것에서도 제조물책임은 사업자적 측면보다 개인 소비자의 보호에 더욱 비중을 두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따라서 계약과 불법행동의 소 또한 여전히 제조물책임과 소비자보호의 측면에서 중요한 법적 근거로 활용될 것이다.

하지만 「소비자보호법」의 제정과 개정을 통해 제조물책임의 범위를 더 명확히 규정하고 제조물책임의 관점에서 소비자의 권리, 의무, 배상의 기초를 다졌다는 점에서 말레이시아 제조물책임규정은 그 법적 보호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⁹¹⁾ 이는 제조물책임에 대해 유럽 국가들의 사법을 변화시킨 유럽연합규정 (EC Directive)와 미국, 일본 등의 제조물책임법 발전과도 같은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말레이시아 제조물책임규정이 아세안 국가들과 더 나아가 한국, 중국, 일본 등의 동북아 국가들의 제조물책임법과도 조화를 이룬다면 국제 무역에 있어 각국의 소비자뿐만 아니라 생산자와 판매자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91) Aishah Bidin, 자문의견서, 2013년 10월

제 4 장 결론: 비교 및 시사점

이상에서 태국과 말레이시아의 민법상 여러 소비자보호법제와 제조물책임 규정을 살펴보았다. 독립법으로 「제조물책임법」이 제정되어 있는 태국의 경우 「제조물책임법」상에서 제품의 결함에 의해 발생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해 포괄적인 보호가 가능하고, 이외에도 민법상 「계약법」과 불법행위 등에 의거한 다양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배상이 가능하다.

한편 법체계상 독립적으로 「제조물책임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지만 「소비자보호법」 내에 제조물책임규정이 독립장을 이루고 있는 말레이시아의 경우 「소비자보호법」에서 이루어지는 폭넓은 소비자 보호와 함께 무과실책임을 보장하는 제조물책임규정이 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일 수 있는 소비자의 피해 배상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더군다나 최근에 개정된 「소비자보호법」 내 계약에 관한 조항들은 소비자가 계약에 의해 권리를 제한하는 불리한 상황을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소비자의 권리를 한층 보장하는 개정이라 볼 수 있다.

「계약법」에 기초하여 제조물책임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태국과 말레이시아 모두 계약 당사자만이 배상대상자가 된다는 제한이 있다. 이는 직접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소비자의 피해 사례의 경우 그 배상에 제한이 된다는 단점이 있는데 이는 불법행위에 근거한 제조물책임이나 「소비자보호법」이나 「제조물책임법」에 의거해 제조물책임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결이 된다.

「계약법」과 제조물책임법·제조물책임규정에 있어 다른 점으로 판매자와 구매자가 사전에 합의하여 작성하는 판매자 책임면제조항이 있을 수 있다. 이는 계약법상으로는 쌍방이 합의하여 작성하는 조항인 만큼 이후 결함이 발생하더라도 동의한 내용에 의해 판매자의 책

임을 물을 수 없게 되고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태국과 말레이시아 모두 제조물책임법·제조물책임규정 상으로는 이와 같이 쌍방이 합의하여 미리 작성한 책임면제조항은 효력을 잃게 된다. 특히 말레이시아의 경우 두 조항이 상충할 시 제조물책임조항이 「계약법」상 조항에 우선하도록 「소비자보호법」에 규정하여 그 보호의 강도를 높였다고 볼 수 있다.

태국의 「제조물책임법」과 말레이시아의 제조물책임규정 모두 무과실책임원칙을 도입하여 입증책임을 제조자·판매자 측에 두고 있다. 태국의 「제조물책임법」에서 특이할 점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한다는 것인데, 그 허용치가 적고 실제로 법원에서 그렇게 판결되는 사례가 많지 않지만 앞으로의 발전 양상을 주목할 만하다 하겠다. 또한 태국에서는 제조물책임에 일부 농산물을 제외한 농산품도 그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바, 가공되지 않은 농산품을 제외하고 있는 말레이시아나 모든 농산품을 「제조물책임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와 비추어 볼 때 특이점이라 하겠다.

한 편 말레이시아의 제조물책임규정이 태국의 「제조물책임법」과 비교했을 때 상이한 점으로는 결함이 있는 물품의 경제적 배상은 제외된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태국과 말레이시아의 「제조물책임법」 규정과 한국의 그것을 비교하여 정리하자면 다음 표와 같다.

<표-1> 태국, 말레이시아, 한국의 제조물책임 관련 법제 비교표

	태 국	말레이시아	한 국	비 고	
계약법	입증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 위반시 (제품 결함시), 소비자는 제품의 결함을 입증할 의무, 판매자는 결함이 있는 제품에 대한 책임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 위반시 (제품 결함시), 소비자는 제품의 결함을 입증할 의무, 판매자는 결함이 있는 제품에 대한 책임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 위반시 (제품 결함시), 소비자는 제품의 결함을 입증할 의무, 판매자는 결함이 있는 제품에 대한 책임의무 	
	배상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취소, 환불, 배상요구 가능 소비자의 책임 분담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취소, 환불, 배상요구 가능 소비자의 책임 분담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취소, 환불, 배상요구 가능 소비자의 책임 분담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 당사자인 소비자만이 배상요구 가능
	면책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비자가 제품 구매 시 이미 결함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평범한 소비자가 일반적인 수준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결함을 알았어야 마땅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품판매법상 ‘제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판매자의 사업상 판매 제품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비자가 제품 구매 시 이미 결함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평범한 소비자가 일반적인 수준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결함을 알았어야 마땅한 경우; 	

	태 국	말레이시아	한 국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 배달시 결함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소비자가 제품을 수취한 경우; 혹은 • 공개 판매에서 제품을 구매한 경우 • 판매자와 소비자 쌍방의 사전합의도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이 특허명이나 상품명으로 판매된 경우 • 판매계약의 성사 이전에 이미 소비자에게 결함이 고지된 경우 • 판매계약의 성사 이전에 결함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제품검사가 이루어진 경우 • 소비자의 손실이 제품 의 결함으로 야기되지 않은 경우 • 판매자와 소비자 쌍방의 사전합의도 가능 (하지만 소비자보호법 제 10장에서 소비자보호법 제 조항을 계약법이나 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 배달시 결함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소비자가 제품을 수취한 경우 	

	태 국	말레이시아	한 국	비 고
		<p>품판매법상의 책임면제 조항보다 우위에 둠)</p>		
<p>불법행 위-과실</p>	<p>입증책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의 생산자는 소비자에게 주의의무를 가지거나 그 주의 의무를 위반하였으며, 그 위반 사실 때문에 소비자는 피해를 입었다는 세 가지들 소비자가 입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자의 과실을 소비자가 입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가 제조자의 과실을 입증하고 제품의 결함과 피해의 인과관계를 규명해야 배상 가능
	<p>배상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의 가격, 피해의 배상, 수리비용, 의료비용, 금여포함, 신체·정신적 피해배상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함제품에 의해 야기된 신체상의 손해나 재산상의 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의 가격, 피해의 배상, 수리비용, 의료비용,

제 4 장 결론: 비교 및 시사점

		태 국	말레이시아	한 국	비 고
<p>제조물 책임</p>	<p>적용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물책임법 시행시기 이후 판매된 제품의 결함 • 결함인지로부터 3년이내 / 구매로부터 10년이내 • 농산품과 전기를 포함, 제조되거나 수입된 모든 제품 (각료규정상 예외조항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goods) 뿐만 아니라 상품을 구성하는 원자재나 부품도 모두 제조물로 정의 • ‘제품’으로 제한함으로써 계약에 의해 제공되는 권리나 혜택으로 정의된 ‘서비스’는 제조물책임규정에서 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되지 않은 농산품은 제조물에서 제외
	<p>입증책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과실책임: 제품의 정상적인 사용이나 보관에 의해 부상 발생 --> 사업자에게 입증 책임 전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과실책임: 소비자가 피해를 입증 --> 제조사나 판매자에게 책임 전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과실책임: 소비자가 피해를 입증 --> 제조사나 판매자에게 책임 전가⁹²⁾ 	

	태 국	말레이시아	한 국	비 고
책임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 제조자, 수입업자, 판매자, 그리고 제조자나 수입자로 인식되는 모든 이 • 연대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자: 제품의 생산자이거나, 자신을 생산자로 표지한 자이거나, 아니면 제품을 말레이시아로 제품을 수입해 온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자: 제조·가공·수입자, 혹은 제조물에 자신을 가목의 자로 표시하거나 가목의 자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시를 한 자 	
배상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적 정신적 상해에 대한 배상, 가족의 정신적 피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적 정신적 상해에 대한 배상, 가족의 정신적 피해배상 • 결함이 있는 제품이나 그와 관련한 경제적인 배상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 • 결함 제조물에 대해 발생한 손해는 배상에서 제외 	
면책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하지 않은 제품이 아니다 • 피해 소비자는 제품이 안전하지 않음을 인지하고 있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 준수함에 따라 생긴 결함 • 다른 사람에게 결함이 있는 제품을 인계하지 않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제조물의 공급자가 아니다 • 해당 제조물 공급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 	

제 4 장 결론: 비교 및 시사점

	태 국	말레이시아	한 국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가 설명서를 따르지 않아 부상이 발생했다 • 소비자와 제작자 쌍방향으로 사전에 작성된 사전면책은 무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 손해와 관계있는 시점에는 결함이 없었다 • 제조자가 결함을 발견할만한 과학기술적 수준이 되지 못했다 • 결함은 해당 제품이 부품으로 들어가서 조립된 다른 완제품의 결함으로 그 완제품의 디자인상의 결함이 본 결함을 야기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하였다 • 원재료나 부품의 경우 그 원재료나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 	
소송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소시효 3년 • 당사자나 소비자보호이사회에서 소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소시효 3년 • 말레이시아소비자청구법원에 소 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소시효 3년 • 분쟁 조정, 협상, 집단소송 가능 	

제 4 장 결론: 비교 및 시사점

	태 국	말레이시아	한 국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재나 조정, 협상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재외 합의 등 소송외 분쟁해결 모색 가능 • 해외 판결의 말레이시아 법원 등록 가능 		

92) 한봉희, 《제조물책임법론》, 대왕사, 1997, 21면, 제조물책임법 제3조 1항

이렇게 두 나라 모두 소비자의 권리를 진작하는 방향으로 제정과 개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제조물책임규정의 도입으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소비자의 보호는 더욱 강화되었다. 따라서 실제로 소송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빈번하지 않다고 하지만 그래도 점점 증가추세인 제조물책임사건의 경우, 현지 내국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사건의 종류, 발달을 주목해야 하겠지만, 외국 사업자를 피고소하는 경우,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의 사업자가 그 대상이 되는 경우는 소송문서의 송달에서부터 판결의 이행과 집행까지 그 이론을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말레이시아에서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제조물책임소송의 경우 국제계약이나 무역상의 계약조항위반에 기초하여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고, 아니면 중재나 화의 등을 통해 소송을 피할 수도 있다. 또 이미 다른 나라에서 판결이 난 경우 말레이시아법상 상호인정국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상대국의 판결을 말레이시아 법원에 판결 날로부터 6년 이내에 등록하고, 말레이시아 법원에서 그 판결을 인정하게 된다. 외국에서 행해진 중재의 경우에는 중재에 대한 뉴욕협약회원국이기 때문에 말레이시아는 그 중재의 결과도 인정한다.

태국과 말레이시아의 현지 법제에 따라 제조물책임소송이 이루어진 경우, 그리고 그 소송의 피고가 한국의 사업자인 경우, 현지 법원에서 이루어진 제조물책임판사건의 결의 승인과 집행이 한국에서 한국사업자를 대상으로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국제재판관할에 대한 판단, 특히 이미 현지에서 소의 판결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국과 한국이 상호보증협약의 대상국인지를 살피고 소의 진행에 있어 그 절차가 정당했는지 등을 살펴 합당하다면 국내에서도 그 판결을 승인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⁹³⁾ 하지만 외국 판결의 승인과

93) 이정식, 국제 제조물책임소송에 관한 고찰

그 강제적 집행은 또 다른 문제로, 한국 민사소송법의 집행판결제도에 따라 적법할 때에만 집행이 가능하다.⁹⁴⁾

지금까지 태국과 말레이시아 두 국가에서 한국 기업이 소송 대상이 된 경우는 알려진 바 없다. 하지만 소비자의 권리 보호가 소비자보호법 뿐만 아니라 여러 민, 상법, 나아가 제조물책임법에서 더욱 강화되어 가는 한 편, 두 국가를 상대로 한 교역은 점점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에 우리 기업이 제조물책임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곧 발생하고 그 빈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연구를 지속적으로 이어가 태국과 말레이시아의 현지 동향을 살피며 법제의 제·개정 실정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94) 민사소송법 제476조, 제477조. 외국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판결로 그 적법함을 선고한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최공웅, 국제소송, 육법사 1994. 531-532면; 이정식 재인용.

참고 문헌

<단행본>

Gregory L. Fowler, International Product Liability Law, a Worldwide Desk Reference, Aspatore Books, 2004

Jocelyn Kellam, Product Liability in the Asia-Pacific, The Federation Press, (2009)

최공웅, 국제소송, 육법사 1994

이정식, 국제 제조물책임소송에 관한 고찰

<논문 및 보고서>

EU Amends Product Liability Directive to Include Agricultural Products, International Law Update Jun99, Vol. 5

Product liability extension to primary agricultural products, David Jukes, British Food Journal, Vol. 101 Iss: 4

ICLG TO; Product Liability 2011

<법과 판례>

태국민상법(Civil and Commercial Code)

태국 불공정 계약조항법(Unfair Contract Terms Act BE 2540(1997))

태국 제조물책임법 (Unsafe Goods Liability Act BE 2551 (2008), a.k.a. Product Liability Act 2008)

말레이시아 생물학적안정성법 (Biosafety Act 2007, Act 678)

참 고 문 헌

말레이시아 식품법 (Food Act 1983, Act 281)

말레이시아 형법 제 17장 378-462조 (Chapter XVII, Malaysian Penal Code, Section 378 - 462)

말레이시아 소비자보호법 (Consumer Protection Act)

말레이시아 제품판매법 (Sales of Goods Act)

말레이시아 상호 판결 이행법 (the Reciprocal Enforcement of Judgments Act 1958)

외국 중재 결과 인정과 이행에 대한 뉴욕 협약 (the New York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Donoghue v. Stevenson [1932] AC85

Takong Tabari v. Government of Sarawak (1996) 5 MLJ 435

Commissioners of Customs and Excise v. Barclays Bank [2006] 4All ER 256

KGV & Associate Sdn Bhd v. The co-operative Central Bank Ltd [2006] 5 MLJ 513

민사소송법

<인터넷 자료>

관세청 수출입통계,

[http://www.customs.go.kr/kcsweb/user.tdf?a=user.newTradestatistics.
NewTradestatisticsApp&c=1006&mc=STATS_INQU_TRADE_030](http://www.customs.go.kr/kcsweb/user.tdf?a=user.newTradestatistics.NewTradestatisticsApp&c=1006&mc=STATS_INQU_TRADE_030)

별첨

별첨 1: 태국의 제조물책임법

별첨 2: 말레이시아의 제조물책임법

별첨1: 태국의 제조물책임법

Liability for Damages Arising from Unsafe Products Act 2551 B.E.

BHUMIBOL ADULYADEJ REX.

Given on 13 February 2551 B.E.

Being the 63rd Year of the Present Reign

His Majesty King Bhumibhol Adulyadej is pleased to announce as follows:

Whereas it is deemed proper to have a law on liability for damage arising from unsafe products.

This Act has some provisions related to limits placed on the rights and freedoms of persons, permitted based on section 29 and 43 of the Constitution of the Kingdom of Thailand and the authority vested in the provisions of law.

His Majesty the King has provided this Act based on the recommendation and acceptance of the National Legislative Council as follows:

Section 1: This Act is hereby called “Liability for Damage Arising from Unsafe Products B.E. 2551.”

별 첨

Section 2: This Act shall be effective beginning one year after its publication in the Government Gazette.

Section 3: In the event a law for liability for damage sustained from unsafe products is in existence which provides greater protection to the damaged party than stipulated in this Act, that law shall be enforceable.

Section 4: In this Act,

“Product” means all assets produced or imported for sale, including agricultural products and electricity. The exception being products prescribed in the Ministerial Regulations.

“Agricultural products” means products arising from agricultural activities, such as farming, animal husbandry, aquatic livestock, silkworm cultivation, lac cultivation, and mushroom cultivation, but shall not include products arising through natural processes.

“Produce” means making, combining, adding, creating, assembling, inventing, converting, altering, modifying, screening, packaging, freezing, exposing to radiation, or any other similar act.

“Damaged party” means person sustaining damage arising from an unsafe product.

“Damage” means damage arising from an unsafe product, regardless of whether the damage is to life, body, health, hygiene, mental state, or assets. This shall not include damage to the unsafe product.

“Damage to mental state” means pain, suffering, fear, anxiety, sorrow, shame or other similar mental damage.

“Unsafe product” means products that cause or may cause damage, regardless of whether it was caused by negligence during the production

process or the design process. No guidelines being given for storage, or warning, or information related to the product, or guidelines being given but in an incorrect manner or vaguely so as to be improper when considering the condition of the product, including the normal method of use and storage for the product.

“Sell” means distributing, disposing, or exchanging for commercial benefit and includes leasing, lease purchasing, procuring, soliciting, and exhibiting as stated.

“Import” means bringing or ordering goods into the Kingdom for sale.

“Entrepreneur” means

1. Producer or a party authorizing the production.
2. Importer
3. Seller of product who cannot identify his producer, party authorizing the production, or importer.
4. Party using a name, trade name, trademark, mark, message or other means which may be understood as being the producer, party authorizing the production, or importer.

Section 5: All entrepreneurs shall be jointly liable for damages occurring to the damaged party from an unsafe product sold to the consumer. This shall apply to intentional damages or damages arising from the negligence of the entrepreneurs.

Section 6: For the entrepreneurs to be liable according to section 5, the damaged party or his prosecuting representative, based on section 10, shall prove that the damaged party sustained damages from the product of the entrepreneurs, and the use or storage of the product was done in

별 첨

a normal manner. However, evidence shall not be required to the effect that the damages occurred from the Action of a particular entrepreneur.

Section 7: The entrepreneurs shall not be liable for damages arising from an unsafe product if it can be determined that

Section 8: The party producing products by order of the party authorizing the production shall not be liable if evidence can be provided that the danger was caused by the design of the party authorizing the production or compliance to the instructions provided by the party authorizing the production, whereas the producing party had not expected such danger.

The producer of the product components shall not be liable if it can be proved that the danger of the products was caused by the design, assembly, instructions for usage and storage, and warning or product information by the party producing the product.

Section 9: Agreements entered into between the consumer and the entrepreneurs before the damages and the statement of the entrepreneur to disclaim or place limits on his liability for damages caused by the unsafe product cannot be asserted as a disclaimer or limit the entrepreneur's liability.

Section 10: The Consumer Protection Committee, associations and foundations certified by the Consumer Protection Committee under consumer laws shall be authorized to file legal proceedings for compensation in place of the damaged party under the stipulations related to filing of legal proceedings and prosecuting representation for legal proceedings, which shall be enforced with exceptions.

All fees shall be exempted for filing of legal proceedings in place of the damaged party under Paragraph One, with the exclusion of the final fee.

Section 11: The court shall be authorized to demand compensation for damages based on the following, in addition to compensation for violations of the Civil and Commercial Code:

Section 12: The right to demand compensation arising from unsafe products according to this Act will expire after 3 years counting from the date the damaged party became aware of the damages and became aware of the entrepreneurs responsible, or after 10 years counting from the date the product was sold.

In the event the damages were to life, body, health, or hygiene by the accumulation of chemicals in the body of the damaged party, or in the event a period of time must pass before any symptoms appear, the damaged party or his prosecuting representative, according to section 10, must demand his rights 3 years counting from the date that he became aware of the damages and the entrepreneurs responsible, but not to exceed 10 years counting from the date he became aware of the damages.

Section 13: In the event of negotiation for compensation between the entrepreneur and the damaged party or his prosecuting representative, according to section 10, the prescription period ceases during the period of negotiation until either party terminates the negotiation.

별 첨

Section 14: The stipulations to the Act shall not deprive the damaged party of his rights to demand compensation based on rights under other laws.

Section15: Products sold to the consumer before this Act's enforcement shall not be governed under this Act.

Section 16: The Prime Minister shall abide by this Act and shall be authorized to prescribe Ministerial Regulations for compliance with this Act.

The Ministerial Regulations as stated shall be enforceable after its publication in the Government Gazette.

Countersigner

General Surayud Julanond

Prime Ministe

별첨2: 말레이시아의 제조물책임법

PART X PRODUCT LIABILITY

Interpretation

66. (1) In this Part,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agricultural produce” means any produce of the soil, of stock farming or of fisheries; “damage” means death or personal injury, or any loss of or damage to any property, including land, as the case may require; “dependant” has the same meaning as in the Civil Law Act 1956 [Act 67];

“producer”, in relation to a product, means--

- (a) the person who manufactured it;
- (b) in the case of a substance which is not manufactured but is won or abstracted, the person who won or abstracted it;
- (c) in the case of a product which is not manufactured, won or abstracted but the essential characteristics of which are attributable to an industrial or other process having been carried out, the person who carried out that process; “product” means any goods and, subject to subsection (2), includes a product which is comprised in another product, whether by virtue of being a component part, raw material or otherwise.

(2) For the purposes of this Part, a person who supplies any product in which other products are comprised therein, whether by virtue of being a component part, raw material or otherwise, shall not be treated by reason

별 첨

only of his supply of that product as supplying any of the products so comprised therein. Meaning of “defect”

67. (1) Subject to subsections (2) and (3), there is a defect in a product for the purposes of this Part if the safety of the product is not such as a person is generally entitled to expect.

(2) In determining what a person is generally entitled to expect in relation to a product, all relevant circumstances shall be taken into account including--

- (a) the manner in which, and the purposes for which, the product has been marketed;
- (b) the get-up of the product;
- (c) the use of any mark in relation to the product;
- (d) instructions for or warnings with respect to doing or refraining from doing anything with or in relation to the product;
- (e) what may reasonably be expected to be done with, or in relation to, the product; and
- (f) the time when the product was supplied by its producer to another person.

(3) Nothing in this section shall require a defect to be inferred from the mere fact that the safety of a product which is subsequently supplied is greater than the safety of the product in question.

(4)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safety”, in relation to a product, shall include--

- (a) safety with respect to products comprised therein;
- (b) safety in the context of risk of damage to property; and
- (c) safety in the context of risk of death or personal injury.

Liability for defective products

68. (1) Where any damage is caused wholly or partly by a defect in a product, the following persons shall be liable for the damage:

- (a) the producer of the product;
- (b) the person who, by putting his name on the product or using a trade mark or other distinguishing mark in relation to the product, has held himself out to be the producer of the product; and
- (c) the person who has, in the course of his business, imported the product into Malaysia in order to supply it to another person.

(2) Where damage is caused wholly or partly by a defect in a product, the person who suffered the damage may within a reasonable period after the damage occurs request the supplier to identify any or all of the persons referred to in subsection (1), whether or not he is or they are still in existence.

(3) For the purpose of subsection (2), it is immaterial whether the supplier supplied the defective product to--

- (a) the person who suffered the damage;
- (b) the producer of a product in which the defective product is comprised therein; or
- (c) any other person.

(4) Where the supplier fails to comply with a request under subsection (2) within a reasonable time having regard to all the circumstances, the supplier shall be held liable for the loss or damage.

(5) This section shall not apply to a person in respect of any defect in agricultural produce if the only supply of the agricultural produce by the person to another person was at a time when the agricultural produce has not undergone any industrial process.

별 첨

(6) Where two or more persons are liable under this Part for the same damage, their liability shall be joint and several.

(7) This section shall be without prejudice to any liability arising otherwise than under this Part.

(8) The Minister may, by order published in the Gazette, declare that no proceeding shall be brought before the Tribunal or any court in respect of any defect in any goods after the expiry of such period calculated from the date of manufacture of such goods or class or both of such goods as may be specified in the order; and upon the making of such declaration, no proceeding shall be brought in respect of such defect before the Tribunal or any court.

69. (1) Where any damage is caused wholly or partly by a defect in a product, the liability of the person liable for the damage under section 68 shall not include the loss of or damage to--

(a) the defective product;

(b) the whole or any part of the product which comprises the defective product; or

(c) any property which at the time it is lost or damaged is not--

(i) of a description of property ordinarily intended for private use, occupation or consumption; and

(ii) intended by the person suffering the loss or damage mainly for his own private use, occupation or consumption.

(2)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 (1)(c), loss or damage to property shall be deemed to have occurred at the earliest time at which a person with an interest in the property has knowledge of the material facts about the loss or damage.

(3) For the purposes of subsection (2)--

(a) the material facts about any loss of or damage to any property are such facts about the loss or damage as would lead a reasonable person with an interest in the property to consider the loss or damage sufficiently serious to justify his instituting proceedings for damages against a defendant who does not dispute liability and is able to satisfy a judgment against him;

(b) a person's knowledge includes knowledge which he may reasonably be expected to acquire--

(i) from facts observable or ascertainable by him; or

(ii) from facts ascertainable by him with the help of appropriate expert advice which it is reasonable for him to seek:

Provided that a person shall not be deemed to have knowledge of a fact ascertainable by him only with the help of expert advice unless he has failed to take all reasonable steps to obtain and where appropriate, to act on that advice.

Application of other written law

70. (1) For the purposes of a claim under the Civil Law Act 1956, any damage for which a person is liable under section 68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caused by the person's wrongful act, neglect or default.

(2) Where the person who suffered the damage caused wholly or partly by a defect in a product dies after suffering the damage, the request to the supplier under subsection 68(3) may, for the purposes of a claim under the Civil Law Act 1956, be made by the personal representative or

별 첨

dependant, as the case may be, of the deceased person.

(3) Where any damage is caused partly by a defect in a product and partly by the fault of the person who suffered the damage, the Civil Law Act 1956 shall have effect as if the defect were the fault of every person liable under this Part for the damage caused by the defect.

(4) For the purposes of any written law conferring jurisdiction on any court with respect to any matter, liability for damage under this Part shall be treated as liability in tort.

(5) For the purposes of subsection (3), “fault” has the same meaning as in the Civil Law Act 1956.

Prohibition on exclusion from liability

71. The liability of a person under this Part to a person who has suffered damage caused wholly or partly by a defect in a product, or to a dependant of such a person, shall not be limited or excluded by any contract term, notice or other provision.

Defences

72. (1) In any civil proceeding under this Part against any person in respect of a defect in a product, it shall be a defence for that person to show--

- (a) that the defect is attributable to compliance with any requirement imposed under any written law;
- (b) that he did not at any time supply the defective product to another person;
- (c) that the defect did not exist in the product at the relevant time;
- (d) that the state of scientific and technical knowledge at the

relevant time was not such that a producer of products of the same description as the product in question may reasonably be expected to discover the defect if it had existed in his product while it was under his control; or (e) that the defect--

(i) is a defect in a product in which the product in question is comprised therein (the “subsequent product”); and

(ii) is wholly attributable to--

(A) the design of the subsequent product; or

(B) compliance by the producer of the product in question with instructions given by the producer of the subsequent product.

(2) For the purposes of subsection (1), “relevant time”--

(a) in relation to electricity, means the time at which it was generated, being a time before it was transmitted or distributed; and

(b) in relation to any other product, means--

(i) where section 68 applies, the time when the producer supplied the product to another person; and

(ii) where section 68 does not apply, the time when the product was last supplied by a person to whom section 68 applies to another person.